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9일 09시 03분

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'의견제출서' 서식입니다.

2022.02.03 조회수 3760 등록자 정하경

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관련,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'의견제출서' 서식입니다.

-행정절차법 제27조(의견제출)-

-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-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.
-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.
-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[\[별지 제11호서식\] 의견제출서\(행정절차법 시행규칙\).hwp](#) (4652 hit/ 12.5 KB)

[↓](#)

[미리보기](#)

 [\[별지 제11호서식\] 의견제출서\(행정절차법 시행규칙\).pdf](#) (1197 hit/ 39.9 KB)

[↓](#)

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
재택치료 안내문(일반군, 집중군, 동거인) 및 FA...

다음글

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2022년 2월 식단표

MokPo - Si
Web Contents

